

선	기관의장
람	



호외 2023년 10월 20일

발행자 : 익산시청  
발행처 : 홍보담당관

## 고 시

- 익산시 고시 제2023-190호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
시행계획(사업 기간 연장) 승인 고시 ..... 01

## 공 고

-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-71호 검사명령 미이행 자동차  
운행정지 명령 공고 ..... 03
-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-73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..... 05

## 입법예고

- 익산시 공고 제2023-2737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 
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(안) ..... 06
- 익산시 예술의전당 공고 제2023-6호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 
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..... 15

회							
람							



익산시 고시 제2023-190호

##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(사업 기간 연장) 승인 고시

『농어촌정비법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『농어촌정비법 시행령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10. .

## 익 산 시 장

- 사업명 :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
- 사업목적 :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함라면의 잠재력과 지역 고유테마를 살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- 사업위치 :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일원
- 사업비 : 4,000백만원(국비 2,800, 군비 1,200)
- 사업기간 변경 : 당초 : 2019년 ~ 2023년(5개년)  
⇒ 변경 : 2019년 ~ 2024년

## 6. 주요사업내용

구 분	사 업 내 용	비 고
기초생활 기반확충	합 계	
	행복복지센터	
	주차장 조성	
지 역 경 관 개 선	안전시스템 구축	
	중심테마거리 조성	
지 역 역 량 강 화	함라산 행복길 조성	
	주민교육	
	지역활성화	
	홍보마케팅	
제 경 비	마을경영지원	
	설계비, 감리비 등	

## 7. 사업 시행자 : 익산시장

## 9. 기타 문의사항

- 시행계획서는 익산시 농촌활력과에 비치되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수립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농촌활력과(☎ 063-859-722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-71호

## 검사명령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받고 자동차 종합검사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3.10.12.~ 2023.11.01.(20일)

2. 공고대상

자동차 등록번호	차명(차대번호)	소유자	사유	운행정지 명령일
13벼4372	제네시스 (KMHGA41BBDU229022)	김*진	검사명령 이후 1년이상 종합검사 미이행	2023.10.12.
13마3292	코란도 (KPTA0A181DP099224)	최*남	검사명령 이후 1년이상 종합검사 미이행	2023.10.12.
20고1756	체어맨 (KPBNE2AA1BP113170)	김*산	검사명령 이후 1년이상 종합검사 미이행	2023.10.12.
14벼5616	SM5 (KNMA4C2BM8P322839)	이*웅	검사명령 이후 1년이상 종합검사 미이행	2023.10.12.
81루9958	포터Ⅱ (KMFZCS7JP9U459005)	박*호	검사명령 이후 1년이상 종합검사 미이행	2023.10.12.
54두7252	크루즈 2.0 디젤 (KLAJA69YDEK625646)	조*현	검사명령 이후 1년이상 종합검사 미이행	2023.10.12.
38마1432	제네시스 (KMHGB41AP9U041430)	양*진	검사명령 이후 1년이상 종합검사 미이행	2023.10.12.
36더7667	SM5 (KNMA4C2BM5P187135)	남*은	검사명령 이후 1년이상 종합검사 미이행	2023.10.12.
전북82사 3378	포터Ⅱ 내장탑차 (KMFZSZ7KADU986224)	최*진	검사명령 이후 1년이상 종합검사 미이행	2023.10.12.
88소1090	라이노4.5톤 (KN3LAP2T2TK057131)	김*기	검사명령 이후 1년이상 종합검사 미이행	2023.10.12.

3. 유의사항

-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직권말소가 될 수 있으며, 동법 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4. 문의처 : 익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(☎ 063-859-4581)

# 익산시장

(관인 생략)

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-73호

##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
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명 :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
2. 공고기간 : 2023. 10. 12. ~ 2023. 10. 31. (20일간)
3. 공고대상

차량번호	차명 (차대번호)	소유자명	운행정지명령일	사유	비고
49누9448	쏘나타 (KMHEC41BBAA049448)	오*경 외1	2023. 10. 11	소유자 요청	

### 4. 공고내용

- 가. 자동차사용자(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)는 운행정지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,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
- 다.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,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,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직권말소 될 수 있고, 무등록 차량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라.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(063-859-465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0월 12일

익산시장  
(관인생략)

익산시 공고 제2023-2737호

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20일

익 산 시 장

##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(안)

### 1. 제안이유

시 지정 현수막제시대(이하 “옥외광고시설물”이라 한다)의 공정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 범위를 별도 규정하고,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·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사무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18조제4항)
- 지정 현수막제시대 운영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탁할 경우 다음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

- ① 현수막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.징수
- ②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.징수
- ③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
- ④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.징수

나.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(안 제18조제5항)

- 공단이 위탁받은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, 사용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.
- 사용료 부과시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함.

다.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(안 별표7)

- 상단광고 :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급지별로 사용료 부과
- 현수막 : 설치 및 철거시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

시설물	급지	상단광고(원/개소)	현수막	비고
		월간 사용료	사용료	
현수막	1급지	300,000원 이내	■ 현수막(7일 표시) - 3,000원/장	
	2급지	250,000원 이내		
	3급지	210,000원 이내		
	4급지	170,000원 이내		
	5급지	130,000원 이내		

### 3. 의견 제출

- 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.법인 또는 기관.단체 등은 2023년 1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(참조 : 도로 관리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 제출사항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 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기관.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.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제출할 곳 : (우)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(남중동)  
익산시청 도로관리과(전화 859-5920, 팩스 859-5607)
- 라.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### 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도로과 서상영 담당자 (☎ 859-5920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익산시 조례 제 호

##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

###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현수막 표시 신고 및 수수료부과·징수
2. 현수막제시대 상단광고 표시허가 및 수수료부과·징수
3.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협약 및 취소
4. 옥외광고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·징수

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공단이 옥외광고시설물을 위탁받은 경우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(별표7)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,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사장이 공단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별표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7】

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(안 제18조제5항 관련)

시설물	급지	상단광고(원/개소)	현수막	비고
		월간 사용료	사용료	
현수막 지 정 계시대	1급지	300,000원 이내	■ 현수막(7일 표시) - 3,000원/장	
	2급지	250,000원 이내		
	3급지	210,000원 이내		
	4급지	170,000원 이내		
	5급지	130,000원 이내		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8조(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)</u> ① ~ ③(생략) <u>&lt; 신 설 &gt;</u>	<u>제18조(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)</u> ① ~ ③(현행과 같음) <u>제4항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u> 1. 현수막 표시 신고 및 수수료 부과 · 징수 2. 현수막제시대 상단광고 표시 허가 및 수수료 부과 · 징수 3.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 허가 및 취소 4.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· 징수 ④----- -----.
<u>④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</u> <u>&lt; 신 설 &gt;</u>	<u>제5항 공단이 옥외광고시설물을 위탁받은 경우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료 부과기준(별표7)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, 옥외광고시설물 위치에 따른 급지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사장이 공단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</u>

현 행	개 정 안			
< 신 설 >	【별표7】			
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(안 제18조제5항 관련)				
시설물	급지	상단광고(원/개소)	현수막	비고
현수막 지 정 개시대	월간 사용료		사용료	
	1급지	300,000원 이내	▪ 현수막(7일 표시) - 3,000원 / 장	
	2급지	250,000원 이내		
	3급지	210,000원 이내		
	4급지	170,000원 이내		
	5급지	130,000원 이내		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**제17조(수수료)**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)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[개정2016.1.6]  
[[시행일 2016.7.7]]

- 1.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
- 2.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
- 3.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
- 4.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

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 조례

**제18조(옥외광고시설물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)**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도 조례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벽보판 (이하 “옥외광고시설물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23.04.14>

②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 및 시설·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<개정 2023.04.14>

1.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이 포함된 종업원 3명 이상
2.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

3. 작업차량·사다리·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

③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<개정 2023.04.14.>

□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22조(사업)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체육시설(국민생활관,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, 배산실내체육관, 익산문화체육센터, 종합운동장) 관리 및 운영
  2. 공영주차장(모현제1, 모현제2, 영등, 중앙, 익산역 남부) 관리 및 운영
  3.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운영
  4. 종량제봉투,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·컵 등 판매(음식물 쓰레기봉투 포함)
  5. 국가,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
 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사업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익산시 예술의전당 공고 제2023-6호

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20일

익 산 시 장

##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예술단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정근 수당을 신설하고, 사회통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(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)을 준용하여 경조사 휴가 일수를 조정하고자 함
- 나. 정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문책규정의 명문화로 상벌규정을 명확히 하고,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재직기간에 따른 정근수당 신설(안 제35조, 별표 6)
  - 익산시립예술단 근속기간에 따라 연 2회 정근수당 지급(휴직기간 제외)

- ▶ 1년 ~ 5년미만 : 월봉급액의 5%
- ▶ 5년이상~10년미만 : 월봉급액의 10%
- ▶ 10년이상 : 월봉급액의 15%

나. 문책(경고처분)규정 신설(안 제58조)

-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갈음할수 있음

다.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 (안 별표 4)

- 본인 및 배우자의 (외)조부모, 자녀(배우자 포함) 사망시: 2일⇒3일

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은 2023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(참조 : 예술의전당 관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기관·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할 곳 : (우)54567 익산시 동서로 490 (어양동)

익산시 예술의전당 (전화 859-3253, 팩스 831-2619)

라.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### 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예술의전당 익산시립예술단 담당자 (☏ 859-3253, 859-3306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

익산시 규칙 제 호

##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

### 일부개정규칙안

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정근수당”은 익산시립예술단 근속기간에 따라 연 2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.

제5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단,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 경고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.  
별표 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사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대 상	일 수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.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1

별표 6의 단원별 수당표에 정근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예술감독	단무장	반주자 훈련장 악 장	단 원				비고
				총무단원	수석단원	차석단원	일반단원	
정 근 수 당				익산시립예술단 근속기간에 따라 구분 지급 (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) 근속 1년~5년 미만 : 월봉급액의 5% 근속 5년이상 ~ 10년 미만 : 월봉급액의 10% 근속 10년이상 : 월봉급액의 15%				연2회 (1월, 7월)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5조(예술감독·단무장 등 단원의 보수 등) ①·②(생략)            ③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본봉, 수당 등을 지급하며,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35조(예술감독·단무장 등 단원의 보수 등) ①·②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③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“정근수당”은 익산시립예술단 근속기간에 따라 연 2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.</p>
<p>제58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 ① ~ ⑤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58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 ① ~ ⑤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⑥ 단,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.</p>
<p>[별표 4] <u>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32조 관련)</u></p>	<p>[별표 4] <u>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32조 관련)</u></p>

# 의산시 시보

호외 2023년 10월 20일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출산	배우자	10
입양	본인	20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.외조부모	<u>2</u>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<u>2</u>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1

[별표 6] 단원별 수당표(제35조제1항 관련)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출산	배우자	10
입양	본인	20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.외조부모	<u>3</u>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<u>3</u>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1

[별표 6] 단원별 수당표(제35조제1항 관련)

# 익산시 시보

호외 2023년 10월 20일

구분	예술 김독	단무장	반주자 훈련장 악 장	단원				비고
				총 무 단 원	수 석 단 원	차 석 단 원	일 반 단 원	

직  
책  
수  
당

급  
식  
비

명  
절  
휴  
가  
비

공  
연  
수  
당

직  
급  
보  
조  
비

(생략)

<신설>

구분	예술 김독	단무장	반주자 훈련장 악 장	단원				비고
				총 무 단 원	수 석 단 원	차 석 단 원	일 반 단 원	

직  
책  
수  
당

급  
식  
비

명  
절  
휴  
가  
비

공  
연  
수  
당

직  
급  
보  
조  
비

(현행과 같음)

정근 수당	익산시립예술단 근속기간에 따라 구분 지급 (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) <u>근속 1년~5년 미만 : 월봉급액의 5%</u> <u>근속 5년이상 ~ 10년 미만 : 월봉급액의 10%</u> <u>근속 10년이상 : 월봉급액의 15%</u>	연 2 회 (1 월 7월 )

##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입법예고명	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소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

익산시립예술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 
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2023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제출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

익산시장 귀하